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신진연구자 지원 근거 신설 등〉

■ 최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8452호)

2026. 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강 대 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과학기술인 처우 및 안정적 연구환경 보장 규정 신설(안 제4조제2항)	2
2. 과학기술인력의 전주기적·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강화(안 제7조제3항제9호 및 제23조제1항제5호))	5
3. 신진연구자의 육성 및 지원 근거 신설(안 제23조의2)	8
※ 참고자료	
1. 박사후연구원 및 신진연구자 대상 과기부 사업	15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최수진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6. 4. 21.

다. 회 부 일 : 2026. 4.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 과학기술계는 신진연구자와 핵심 인재의 해외 유출이 가속화되고 기초연구 기반이 약화되는 등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음. 이러한 문제는 연구 예산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이 부재한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구조적 한계에서 기인함.

그러나 현행법은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국가의 구체적인 책임이나 신진연구자 육성에 관한 명확한 정책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연구자에 대한 지원과 처우 개선이 단기적인 재정여건이나 정책 변화에 따라 일관성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의 책무로서 과학기술 인재에게 그 역량과 성과에 상응하는 처우와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신진연구자에 대한 육성 및 지원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및 제23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과학기술인 처우 및 안정적 연구환경 보장 규정 신설(안 제4조제2항)

가. 개정안의 내용

- 안 제4조제2항은 국가의 책무로서 과학기술인에게 그 역량과 성과에 상응하는 처우를 보장하고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 등의 책무와 과학기술인의 윤리) ① (생략) <신설> ② ~ ⑤ (생략)	제4조(국가 등의 책무와 과학기술인의 윤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는 과학기술인에게 그 역량과 성과에 상응하는 처우를 보장하고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나. 검토의견

- 최근 우수 이공계 인력의 해외 유출과 신진연구자의 불안정한 연구환경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기술인이 안정적 환경에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과학기술인에게 그 역량과 성과에 상응하는 처우를 보장하고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과학기술 인재의 사기를 진작하고 우수 인재가 연구현장에 지속적으로 유입·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현행 제31조제1항1)에서 이미 정부가 과학기술인이 존중·우대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안정적인 과학기술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과학기술인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과학기술인이 이룬 우수한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적절히 보상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안 제4조제2항 중 과학기술인의 우대 및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에 관한 부분은 현행 제31조제1항과, 연구성과에 대한 보상에 관한 부분은 같은 조 제3항과 규율 내용이 일부 중복될 수 있음.

1) 「과학기술기본법」

제31조(과학기술인의 우대 등) ① 정부는 과학기술인이 존중·우대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안정적인 과학기술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과학기술인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대한민국을 빛낸 과학기술인과 그 업적을 항구적으로 기리고 보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과학기술인이 이룬 우수한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적절히 보상하고 그 성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인을 우대하고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과학기술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등록하게 할 수 있다.

- 따라서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과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이라는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조문 간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 제4조제2항을 별도로 신설하는 방법 외에 현행 제31조를 보완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현행 제31조제1항에 이미 과학기술 인재의 처우 및 안정적 연구환경 보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본 조항의 신설은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임.

2. 과학기술인력의 전주기적·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강화(안 제7조 제3항제9호 및 제23조제1항제5호)

가. 개정안의 내용

- 안 제7조제3항제9호는 과학기술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증진”을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전주기적 지원·활용 증진”으로 변경하려는 것이며, 안 제23조제1항제5호는 정부가 과학기술 인력자원을 양성·개발하고 과학기술인의 활동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하여야 하는 조치에 “과학기술인력의 성장단계별 지원방안 수립”을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① . ② (생략)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8. (생략) 9.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u>활용</u> 증진 10. ~ 16. (생략) ④ ~ ⑧ (생략)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8. (현행과 같음) 9. ----- <u>전주기적(全週期的) 지원·활용</u> ----- - 10. ~ 16. (현행과 같음)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23조(과학기술인력의 양성·활용) ① 정부는 과학기술의 변화와 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창의력 있고 다양한 재능을 가진 과학기	제23조(과학기술인력의 양성·활용) ① ----- ----- -----

현행	개정안
술 인력자원을 양성·개발하고 과학기술인의 활동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4. (생략) <u><신설></u> 5. (생략) ② · ③ (생략)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과학기술인력의 성장단계별 지원방안 수립</u>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과학기술인력 정책은 우수 인재의 유입부터 성장, 정착, 활용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요구되는 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단순한 인력 양성 중심의 접근을 넘어 성장단계와 경력 전주기를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
- 특히 학생연구자, 박사후연구원, 신진연구자, 중견연구자 등 연구자의 성장단계별로 연구 기회, 처우, 경력개발, 연구환경 등에 관한 정책 수요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를 과학기술기본계획과 과학기술인력 양성·활용 시책에 반영할 필요성이 인정됨.

○ 현행법은 과학기술기본계획에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제7조제3항제9호)²⁾, 정부가 과학기술 인력자원을 양성·개발하고 과학기술인의 활동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23조 제1항)³⁾.

- 이에 안 제7조제3항제9호는 과학기술기본계획에 과학기술인력의 전주기적 지원·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 차원의 인력정책 방향을 보다 구체화하려는 것이고, 안 제23조 제1항제5호는 성장단계별 지원방안 수립 근거를 명시하여 과학기술인력 지원정책의 체계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2)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8. (생략)

9.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증진

10. ~ 16. (생략)

3) 「과학기술기본법」

제23조(과학기술인력의 양성·활용) ① 정부는 과학기술의 변화와 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창의력 있고 다양한 재능을 가진 과학기술 인력자원을 양성·개발하고 과학기술인의 활동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과학기술인력의 중·장기 수요·공급 전망의 수립

2. 과학기술인력의 양성·공급계획 수립

3.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기술훈련 및 재교육의 촉진

4. 과학기술교육의 질적 강화방안 수립

5. 고급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의 확충

-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안 제7조제3항제9호는 과학기술 인력의 양성 및 활용 증진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안 제23조제1항제5호 역시 과학기술의 변화와 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인력의 성장단계에 따른 구체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동의한다는 입장임.

3. 신진연구자의 육성 및 지원 근거 신설(안 제23조의2)

가. 개정안의 내용

- 안 제23조의2는 신진연구자를 박사학위 취득 후 연구경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정부가 이들을 발굴·육성하며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23조의2(신진연구자의 육성 및 지원) 정부는 신진연구자(박사학위 취득 후 연구경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사람을 말한다)를 발굴·육성하고 이들에게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나. 검토의견

- 신진연구자는 박사학위 취득 후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해 나가는 초기 단계의 연구인력을 의미함. 현행법에 신진연구자에 대한 정의규정은 없으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4조제3항제1호의3⁴⁾은 이공계인력 육성·

지원 기본계획에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학생연구자 및 신진연구자의 양성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신진연구자가 안정적인 연구기회와 연구환경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장기적인 연구경력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특히 신진연구자 단계는 향후 중견·핵심 연구인력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이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은 과학기술 인재의 지속적인 유입과 국가 연구역량 강화를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이공계 인력을 육성·지원하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인적자원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공계인력의 육성·지원 및 전주기적(全週期的) 활용체제의 구축

1의2. 이공계 기초역량 교육지원 강화

1의3.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제9조의6제1항에 따른 학생연구자, 신진연구자의 양성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지원

2. 이공계인력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 및 처우 개선

3. 연구개발 성과 및 기술이전 성과에 대한 지원

4. 이공계인력의 기업·대학·연구기관·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교류 확대

5. 이공계인력의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6. 이공계 대학 및 대학원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과 산·학·연의 연계체제 강화

6의2. 이공계인력의 활동여건 개선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기술훈련·재교육에 대한 참여 확대

6의3.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치·활용

6의4. 이공계인력의 일·생활 균형 연구문화 조성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이에 개정안은 정부가 신진연구자를 발굴·육성하고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으로, 신진연구자의 연구 정착을 지원하고 우수 인재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앞서 안 제23조제1항제5호에서 정부가 과학기술인력의 성장단계별 지원방안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신진연구자는 과학기술인력의 성장단계 중 초기 연구자 단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안 제23조의2를 별도로 신설할 경우 신진연구자 지원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효과는 있으나, 과학기술인력의 성장단계별 지원방안 수립에 관한 안 제23조제1항제5호와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 또한, 안 제23조의2는 신진연구자를 “박사학위 취득 후 연구경력 1년 이내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

는데, 신진연구자의 범위는 지원사업의 목적, 지원 방식, 소속기관의 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예를 들어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 연구기관 등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성격에 따라 연구경력의 형성 방식과 지원 필요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박사학위 취득 후 일정 기간이라는 단일 기준만으로 신진연구자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참고로,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사업에서 신진연구자의 범위는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또는 7년 이내, 일정 연령 이하 등 사업의 목적과 지원 필요 대상에 따라 달리 설정되고 있으며, 일부 사업은 대학 전임교원이나 연구기관 정규직 여부 등 연구자의 지위도 함께 고려하고 있음(참고: 박사후연구원 및 신진연구자 대상 과기부 사업). 또한, 동일한 지원사업에서도 정책환경과 지원목적의 변화에 따라 신진연구자의 범위와 자격요건이 지속적으로 조정되어 왔음.

< 개인기초연구사업 중 ‘신진연구사업’의 신청 자격 요건 변화 >

- (∼’10년) 최초 임용 후 5년 이내 전임 연구자
- (’11년∼’12년)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또는 만 39세 이하면서 최초 임용 후 5년 이내인 전임 연구자
- (’13년∼’15년) 대학의 전임·비전임 교원 또는 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또는 만 40세 미만 연구자
- (’16년∼’20년)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또는 만 39세 이하인, 대학 전임·비전임 교원 및 연구소 연구원
- (’21년∼현재)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또는 만 39세 이하인, 대학 전임 교원 및 연구소 정규직 연구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따라서 신진연구자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조문 간 중복을 최소화하고 지원대상의 범위를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안 제23조의2를 별도로 신설할 필요성과 안 제23조제1항제5호의 성장단계별 지원방안에 포함하여 규율하는 방안 중 어느 방식이 보다 적절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안 제23조제1항제5호에 이미 과학기술인력의 성장단계별 지원방안 수립이 포함되어 있어 안 제23조의2의 신설보다는 제23조제1항제5호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 한편, 현재 우리 위원회에는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의 개념을 이공계 신진연구자로 확대 개편하고 연구장려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8453호, 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이 함께 계류되어 있음.

문 의 처
02)6788-5236

참고

박사후연구원 및 신진연구자 대상 과기부 사업(2026년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8.)

구분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사업 내용	2026년 예산	박사후연구원 또는 신진연구자 정의
이공계 박사후 연구원 대상	핵융합선도기술개발사업 (1160-301)	Korea-ITER 박사후연구원 지원	한국인 신진인력 대상 ITER 국제기구 근무를 통한 주요 기술분야 박사후 연구원 연구 지원	1,044	박사학위 취득 5년 이내(지원 마감일 기준)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2231-401)	AI 국가대표 양성 (InnoCORE)	국내·외 최고 수준 박사후연구원을 확보하고, 산·학·연 연구진과의 집단·융합연구를 통한 글로벌 연구자로의 성장 지원	52,500	박사학위 취득 5년 이내(지원 마감일 기준)
	울산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2231-403)	AI 국가대표 양성 (InnoCORE)	국내·외 최고 수준 박사후연구원을 확보하고, 산·학·연 연구진과의 집단·융합연구를 통한 글로벌 연구자로의 성장 지원	26,250	박사학위 취득 5년 이내(지원 마감일 기준)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2231-405)	AI 국가대표 양성 (InnoCORE)	국내·외 최고 수준 박사후연구원을 확보하고, 산·학·연 연구진과의 집단·융합연구를 통한 글로벌 연구자로의 성장 지원	13,125	박사학위 취득 5년 이내(지원 마감일 기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2231-402)	AI 국가대표 양성 (InnoCORE)	국내·외 최고 수준 박사후연구원을 확보하고, 산·학·연 연구진과의 집단·융합연구를 통한 글로벌 연구자로의 성장 지원	13,125	박사학위 취득 5년 이내(지원 마감일 기준)
	인재활용 확산지원 (1744-412)	전략기술 박사후 연구원 산학 프로젝트	박사후연구원이 참여하는 국가 전략기술 분야 산학연 컨소시엄을 지원하여 전략기술 연구 성과 창출 및 박사후연구원의 안정적 경력 형성 도모	1,950	전략기술 유관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내국인으로서, 사업 신청 대학 또는 출연연과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거나, 협약체결 전까지 고용 예정인 자
	세종과학 펠로우십	국내트랙	박사후연구원 등 젊은 과학자가 원하는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핵심과학기술인재로 성장·정착할 수 있도록 펠로우십을 통한 연구 몰입 장려	131,102	국내대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①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이거나 ②만 39세 이하인 연구자 중, 국내대학 이공분야 전임교원이 아닌자 또는 국공립정부출연민간연구기관 등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자

구분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사업 내용	2026년 예산	박사후연구원 또는 신진연구자 정의
		국외연수 트랙	우수한 박사후연구자가 국가전략기술 분야 핵심인재로 성장하여 국가경쟁력 확보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국외연수 지원	2,100	국내대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①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이거나 ②만 39세 이하인 연구자 중, 국내대학 아공분야 전임교원이 아닌자 또는 국공립정부출연민간연구 기관 등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자
		복귀·유치 트랙	해외에서 학위를 취득한 우리나라 젊은 연구자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고, 역량 있는 외국인 박사급 연구인력의 국내 유치·정착을 추진	26,000	해외대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①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이거나 ②만 39세 이하인 연구자 중, 국내대학 아공분야 전임교원이 아닌자 또는 국공립정부출연민간연구 기관 등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자
그 외 신진연구자 대상	개인기초연구 (1234-301)	개인기초연구 (신진연구)	신진연구자의 연구 기반 확충 및 수월성 배양을 위한 창의적 연구 지원	497,523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또는 만 39세 이하 인 대학 전임 교원 및 연구소 정규직 연구원
	AI최고급신진 연구자지원 (2232-316)	AI스타 펠로우십지 원	AI 융합 분야 산학협력 연구 기반 창의·도전적 연구 지원을 통해 미래 AI 기술 혁신을 이끄는 최고(Global Top-tier) 수준의 AI 인재 양성	34,000	ICT분야 대학원이 설치된 국내 대학(원)
	나노·소재 기술개발 (1139-301)	소재글로벌 영커넥트	신진연구자의 국가전략기술분야 미래소재 연구를 지원하여, 기술난제를 해결하고 리더십과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	22,725	만 40세 이하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아태이론 물리센터지원 (1235-404)	국제공동연 구를 통한 신진연구자 연구역량 강화	아태 연구 거점(아태이론물리센터)을 중심으로 신진연구자의 국제 공동연구와 연구 교류를 활성화하여 국내 연구수준 향상 추진	5,073	연구시작일 3개월 전까지 박사학위 취득자